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레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9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 3. 29.)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마. 지원결과 관리,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 예정(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3)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3.8.24. ~ 9.13./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 3. 29.)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로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 아동학대로 사망한 자, 고독사로 사망한 자 등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으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화장문화 장례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영장례 지원 시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연고자 및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2023.3.29.자로 개정(시행 2023.9.29.)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 더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등에게도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위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구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사망자	70	77	97	126	* 2022년 서울시 총 현황 : 1,102명

참 고 자 료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9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8. 31. ~ 9. 20.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6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

○ 검토결과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및 본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의료급여 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